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1379
- 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찬성자 11명)
- 발 의 일 : 2016년 8월 18일
- 회 부 일 : 2016년 8월 22일

2. 제안이유

-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나,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를 요청하면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함(안 제17조).
- 나.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(안 제17조 단서 신설).
- 다.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함(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).
- 라. 기록부에 재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16. 8. 26 ~ 2016. 9. 2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의 분실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※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

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,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,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및 감사장으로 분류되고, ‘표창장과 상장’은 시장과 3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, 소방서장이 수여하며, ‘감사장’은 계급과 관련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음.

※ 표창 분류

구 분	수여대상	수여 사유
표창장	①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(이하 공무원 등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	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.
	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	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
	③ 개인 및 단체	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.
	④ 순직 공무원	공무수행 중 순직
상장	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개인 및 단체	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
		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
감사장	개인 및 단체	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		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
가. 표창장 등의 재교부(안 제17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표창사실확인) <u>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.</u>	제17조(표창장 등의 재교부) <u>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한다. 다만,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</u>

- 동 개정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도록 하고,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- 표창장 등의 분실로 재교부 요청시 표창장을 재교부할 경우 표창을 받은 자의 사기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「상훈법」 및 「정부표창규정」 상에는 표창장 등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, 재교부 대신 사실확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. 표창은 표창권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표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 영예(榮譽)성을 감안하여 재교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「상훈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.

- ◆ 「상훈법 시행령」 제31조(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)
 - ③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…<중략>…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◆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(대통령 개인표창 수상 등의 재발급 등)
 - ② 대통령 표창장·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·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행정자치부장관은 …<중략>…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·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○ 최근 3년간 서울시장의 시민 표창현황을 살펴보면, 2014년 6,703건, 2015년 7,960건, 2016년 4,530건(10월 기준)이며, 최근 3년간 민간인 및 민간단체 재교부 요청건은 97건(2014년 40건, 2015년 28건, 2016년 29건)으로 나타났으며, 재교부 요청주요사유는 개인보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▶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·감사장 수여 현황(공무원표창)

(기준 : 2016.10.31.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27,226	5,749	5,650	6,271	6,495	3,061
표창장	24,944	5,363	5,240	5,634	5,912	2,795
상장	2,237	381	397	626	573	260
감사장	45	5	13	11	10	6

▶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·감사장 수여 현황(시민표창)

(기준 : 2016.10.31.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30,819	5,324	6,302	6,703	7,960	4,530
표창장	20,129	3,639	3,653	4,510	5,217	3,110
상장	10,213	1,602	2,541	2,111	2,600	1,359
감사장	477	83	108	82	143	61

▶ 최근 5년간 연도별 표창장 재교부 요청 건수 및 사유

○ 공무원 및 공공단체

연 도	요청건수	교부내역(용도)		비 고
		개인보관	기관제출	
2012	3	2	1	
2013	8	2	6	
2014	8	0	8	
2015	8	2	8	
2016	11	4	7	

○ 민간인 및 민간단체

연 도	요청건수	교부내역(용도)		비 고
		개인보관	기관제출	
2012	23	18	5	
2013	20	17	3	
2014	40	35	5	
2015	28	22	6	
2016	29	24	5	

○ 집행부는 표창장 분실·파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 불가로 표창장 재교부가 남발될 경우 표창의 영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,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의 재교부 요청 시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기존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
○ 한편, 개정안대로 표창장을 재교부할 경우 첫째,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 이전 표창권자의 명의로 표창장을 재교부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, “고의성” 여부에 대한 입증에 어려워 재교부가 남발될 경우 표창장의 영예성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표창장 등을 수여받았으나, 실제 이사 등 다양한 사유로 분실하여 표창 수여를 기리고자 하는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국가의 「상훈법」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표창권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2) 기록부의 비치(제17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재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안 제17조의 2는 표창을 받은 자와 재교부 받은 자의 기록을 작성·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「정부표창규정」

제15조(이중 표창의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.

제19조의2(기록부 비치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- 표창수여자에 대한 기록·관리는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,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는 등(동 규정 제15조) 표창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바, 개정안은 표창수여자의 관리 및 수여 사실 확인과 관련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전문위원 : 김태한

입법조사관 : 신정희

참고자료

1. 최근 6년간 시장표창(표창장, 상장, 감사장) 수여내역








(작성기준 : 2016.10.31.)

연도	합계			공무원 표창			시민 표창		
	표창장	상장	감사장	표창장	상장	감사장	표창장	상장	감사장
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
합 계	45,073	12,450	522	24,944	2,237	45	20,129	10,213	477
	2,583	546	41	1,748	296	0	835	250	41
2012	9,002	1,983	88	5,363	381	5	3,639	1,602	83
	546	94	41	407	66	0	139	28	41
2013	8,893	2,983	121	5,240	397	13	3,653	2,541	108
	590	167	0	437	47	0	153	120	0
2014	10,144	2,737	93	5,634	626	11	4,510	2,111	82
	549	95	0	395	74	0	154	21	0
2015	11,129	3,173	153	5,912	573	10	5,217	2,600	143
	536	106	0	352	62	0	184	44	0
2016	5,905	1,619	67	2,795	260	6	3,110	1,359	61
	362	84	0	157	47	0	205	37	0

1) '소방'은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사업과 관련된 시장표창 수여내역

2) '공무원 표창'은 인사과 심의, '시민 표창'은 행정과 심의

2.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표창장 · 상장 · 감사장 서식

 <p>제 호</p> <h1 style="font-size: 2em;">표 창 장</h1> <p>소속(주소) 직급 성명</p> <p>년 월 일</p> <p>서울특별시장 ○○○ (소속기관장)</p> 	 <p>제 호</p> <h1 style="font-size: 2em;">상 장</h1> <p>소속(주소) 직급 성명</p> <p>년 월 일</p> <p>서울특별시장 ○○○ (소속기관장)</p> 																
 <p>제 호</p> <h1 style="font-size: 2em;">감 사 장</h1> <p>소속(주소) 직급 성명</p> <p>년 월 일</p> <p>서울특별시장 ○○○ (소속기관장)</p> 	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장표창수여사실확인서</h3> <p>○ 성 명 : 꺾자영</p> <p>○ 생년월일 : 48.02.07</p> <p>○ 당시직급(직위) : 기능8급지방방호원</p> <p>○ 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1리 129-15</p> <p>○ 용 도 : 법원제출용 등</p> <p>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 제17조에 의거, 위 사람에 대한 표창수여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연번</th> <th colspan="2">표창수여 당시</th> <th rowspan="2">훈 격</th> <th rowspan="2">표창 번호</th> <th rowspan="2">표 창 일</th> <th rowspan="2">공적내용</th> </tr> <tr> <th>소 속</th> <th>직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아동병원 원무과</td> <td>기능8급 지방방호원</td> <td>시장표창</td> <td>2382</td> <td>2004.11.30</td> <td>직무유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5em; font-weight: bold;">서 울 특 별 시</p> 	연번	표창수여 당시		훈 격	표창 번호	표 창 일	공적내용	소 속	직 급	1	아동병원 원무과	기능8급 지방방호원	시장표창	2382	2004.11.30	직무유공
연번	표창수여 당시		훈 격	표창 번호					표 창 일	공적내용							
	소 속	직 급															
1	아동병원 원무과	기능8급 지방방호원	시장표창	2382	2004.11.30	직무유공											

3. 주요 타 지방자치단체 표창장 재교부 사례

연번	기관명	재교부	조치 및 근거
1	경기도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표창조례)
2	충청북도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내부방침)
3	경상북도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내부방침)
4	부산광역시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내부방침)
5	울산광역시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표창조례)
6	대구광역시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표창조례)
7	전라남도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내부방침)
8	광주광역시	금지	사실확인서 교부 (없음)